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보

http://www.seo.incheon.kr/

선 람	기관의장

제1056호 2014.11.17.(월)

차 례

고 시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--- 1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-1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---- 3

공 고

○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4-1276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- 4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: 홍보미디어과 [032-560-4142]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69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. 11. 1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서달로67번길 15외 1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람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4. 11. 1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4-11-14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 서구 석남동 556-38	서달로67번길 15	2009-06-30	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2	인천 서구 경서동 967-7	청라루비로42번길 6-19	2011-02-14	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 서구 경서동 840-22	청라한울로59번길 14-1	2011-02-14	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5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 서구 연희동 788-8	담지로8번길 7	2011-02-14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 부여	
5	인천 서구 경서동 965-6	청라루비로42번길 5-13	2011-02-14	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 서구 경서동 965-7	청라루비로42번길 5-15	2011-02-14	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 서구 연희동 799-3	중봉대로 602	2009-06-30	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명명	
8	인천 서구 경서동 842-5	청라한울로49번길 26-1	2011-02-14	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9	인천 서구 오류동 1539-7	약암로 43	2009-07-10	인근의 약암온천 명칭 사용	
10	인천 서구 불로동 797-16	검단로744번4길 21	2008-12-31	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네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 서구 오류동 1626-9	도담로 61	2012-10-25	"야무지고 탐스럽다"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	
12	인천 서구 오류동 89,90, 88-3, 88-5, 88-6	봉화로101번길 7	2009-09-22	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0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3	인천 서구 원당동 113	원당대로 983-119	2008-12-3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14	인천 서구 오류동 672-6	봉화로69번길 23	2009-09-22	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5	인천 서구 오류동 1657-6	원당대로 93	2008-12-31	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	
16	인천 서구 오류동 660	봉화로69번길 3	2009-09-22	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이윤정/서구|총무국|홍보미디어과/2014-11-17 10:13:53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- 170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14. 11. 1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도로명주소 폐지사유
오류동 90	봉화로 99	2014-10-20	건물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- 1276호

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17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○ 재활용 의류수거함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, 쓰레기 무단적치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·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, 해당 법령 위임 사항 범위에서 효율적인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○ **제5조의2 신설(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 및 관리 등)**

※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

3. 의견 제출

○ 이 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(참조 : 자원순환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560-4424) 또는 Fax(560-2760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 및 관리 등)

① 구청장은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(이하 “수거함”이라 한다)의 설치에 대한 기준, 수거함의 색상, 규격,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
② 수거함 설치·운영 및 관리는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수거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한다.

③ 구청장은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·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설치·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·관리 및 운영자(이하 “관리자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·처리
2.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
3.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
4.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

⑤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·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.

⑥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설치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,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설치장소 적정 여부 :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,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
2. 기존 수거함 간 거리 : 100미터 이상 유지
3. 수거함 색상, 규격 재질 적정 여부
4.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동의서 등

⑦ 수거함 관리자는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⑧ 구청장은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·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·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